

한국 언론의 윤리성과 자율규제

박종수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한국의 언론은 지난 1980 년대를 기점으로 전자신문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어 언론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환경의 변화는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그 면화의 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1980 년대 말부터 전개된 언론인주화운동이 그것이다.

더욱이 1991 년 5 월 7 일 공보처는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14 조 2 항에 「지사 또는 지국은 정기간행물을 편집발행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분공장은 지사나 지국에 해당되지 않는 본사의 하부조직으로서 지방분공장의 인쇄행위는 본사의 발행행위의 한부분」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¹⁾ 그 후 한국일보를 비롯해 서울의 중앙지들은 서울과 지방의 동시인쇄를 위한 분공장을 설치하거나 지방지와의 계약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동시인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신문들이 서울과 지방에서 거의 동시에 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의 양상은 증면경쟁으로까지 치달아 양적인 팽창이 역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신문들이 자유로이 간행되기에 이르러 엄청난 물량의 신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양과 질의 문제가 제대로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보처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1992 년 6 월말 현재 공보처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5,398 종이며, 이 중 31%인 1,681 종의 간행물이 미창간 또는 발행중단 등 소정의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²⁾ 따라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은 전체의 69%인 3,717 종이며, 이중 일간이 88 개, 통신 2 개, 주간이 1,139 개, 월간 2,502 개, 격월간 이상인 것이 1,637 개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와 병행하여 현재 한국일보가

조·석간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각 신문들이 거의 연중무휴로 발행하고 있고,

30 년 전인 1962 년에는 하루 8 면 체계를 유지하던 것이 오늘날에는 한국일보가 1988 년 6 월부터 주당 100 면의 기록을 세우면서 각 신문들이 일일 32 면 발행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신문 발행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원의 확보, 우수한 기자의 절대적인 부족, 기자에 대한 처우문제, 그리고 각 신문의 광고확보에 따른 문제 등 실로 무한 경쟁의 양상이 몰고 온 결과는 최근의 한국언론윤리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측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부실 언론사의 난립으로 인한 사이비언론의 문제와 과당경쟁, 언론인의 자질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경쟁, 즉 1991 년도부터 시작된 각 신문의 무휴간제와 지면의 양적 증대현상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정보를 휴일 없이 제공하게 된 것은 분명히 독자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증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의 질적인 증가가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윤리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발행지면은 거의 3 배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무한경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양적인 팽창은 보도내용의 질적인 과제를 숙제로 안고 있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뉴스의 제공과 분석보도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은 실제와 거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오보와 개인의 권익침해, 더욱이 사이버언론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언론자율화조치 이후 언론의 윤리성 상실의 대표적 경우는 1990 년 12 월 서울시청기자단이 「수서택지 특별분양사건」과 관련해 한보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받은 사실이다. 그 후 이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서울의 중앙언론사 간부들 200 여명이 기업체로부터 골프 향응을 받은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당시 신문들은 신문주간을 맞이하여 「자정으로 신뢰회복, 자율로 책임완수」라는 표어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결국 구호에 그치고 만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표어를 무색케 한 것은 그 해 11 월 보사부기자단의 촌지사건이 알려지면서 극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에 대한 일반수용자들의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비판의 내용으로서는 신문이나 방송이 사회적 공기로써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하지 못하고, 편향되고 왜곡 과장된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것 등이다. 또 언론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나 특혜를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하고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은 언론기관이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공중의 불만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율화 이후 신문판매의 난맥상은 ABC 제도의 실시문제와 관련하여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어떤 신문사도 선뜻 이 제도의 실시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자사의 발행부수를 ABC 공사가 정한 방식대로 공표를 하지 않고 서로가 눈치만을 보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신문과 잡지 등의 언론사가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론기업의 윤리성의 실체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된다. 부풀린 허구의 발행부수를 내세워 과다한 광고료를 받아 챙기겠다는 저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더구나 판매되지도 않는 신문을 대량으로 찍어 폐지상으로 곧바로 내다파는 행위는 한국언론의 윤리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한국언론윤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신문판매부수의 공개와 언론기업의 윤리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신문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는 언론 스스로가 자신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를 외면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스스로 침해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언론의 공신력, 윤리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³⁾

둘째는 언론은 발행부수 감추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하면서도 일반 기업이나 기타 기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모순된 행위를 보여 줌으로써 이기주의적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언론기업으로서의 알 권리를 빙자한 권력행사라는 면에서 새로운 윤리성의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II. 언론과 윤리

인간은 합리성을 지향하는 이성인인 동시에 충동과 본능에 이끌리는 본능인으로서의 양면성을 지닌 존재다. 윤리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양면적 성격이 대립, 갈등하는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란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⁴⁾

이처럼 윤리는 인간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도덕적 당위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공동체의 바람직한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윤리란 「언론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언론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언론윤리란 언론조직이나 언론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로서의 공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치체계나 행동지침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언론윤리가 「언론이 공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체계나 행동지침」들이라고 한다면 언론윤리의 성격은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진리추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 추구하는 진리란 인간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이해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도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에 있어서 구성원들간의 상호이해나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것이 곧 언론이 추구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사상표현의 자유 없이는 사회구성원들간의 상호이해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언론에게는 언론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러나 사상표현과 언론자유가 아무리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 제 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기의사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라고 자유의 한계를 지 적 하고 있다.⁵⁾ 따라서 윤리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출발하지만, 윤리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개인만의 생존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가치 이다.

윤리가 사회적 제약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존가치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리는 사회구성원들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이것은 곧

직업윤리로 나타나게 된다. 직업윤리는 전체사회의 공존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사회적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집단 단위가 지켜야 할 가치규범이나 행동지침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윤리는 법과 구별된다. 법은 그 실현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이나 윤리는 그러한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다. 또한 법은 타율성을 가지는데 반하여 도덕은 자율성을 가진다. 즉 법은 외부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인데 반하여 도덕이나 윤리는 외부에서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각성하여 실천하는 규범이다. 이처럼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자율성에 있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윤리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의 문제들을 되돌아 봄으로써 자신의 직업윤리를 실천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언론은 사회전반의 윤리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회적으로 들추어 내어 공개하는 사회윤리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특성을 고려 할 때 일반적으로 언론 또한 사회적 역할에 합당한 직업윤리로서의 언론윤리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즉 언론활동이 공동체적 삶을 위한 특정분야의 사회적 역할인 한, 언론윤리는 사회적 제약과 그것에 따르는 특수한 직업윤리를 실천해 나가는 의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은사회의 어떠한 분야보다도 사회윤리적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에 언론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더욱 강조된다.

III. 자유와 책임

언론인들의 윤리의식의 부재에 대한 책임의 일부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언론조직의 기업화에 따라 언론인들이 조직의 논리 속에서 움직이게 됨으로써 본래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견지하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호로츠(William Horosz)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조직에 예속됨으로써 조직에 대한 책임이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강조되어 「책임의 위기」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⁷⁾ 따라서 언론인들은 사회나 수용자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조직내 한 객체로 전락하면서 이기주의적, 직업적 기능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단적인 예가 바로 언론인들의 촛지수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오늘날 언론인들의 93%가 「언론계에서 촛지가 수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⁸⁾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나 언론의 윤리성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언론의 보도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과연 언론의 윤리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과 관련할 때 그 의문은 더욱 혼란스러운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보도할 수 있고, 무엇을 보도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자유 문제는 바로 보도의 자유와 보도의 제한, 즉 통제제도와의 관제 속에서 갈등하는 문제로 귀착되기도 한다.⁹⁾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는 첫째, 공적인 사건에 대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언론은 선택과 사상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공적 여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최근에 이르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일지라도 그 표현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표현」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뉴스보도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책임의 문제가 함께 따르고 있는 문제로 귀착된다. 여하튼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인 개인들이 각자의 신문이나 잡지 등의 언론매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언론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사회구성원의 권리 신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작용한다

언론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는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지 않고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뉴스보도를 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로서 독자는 기자들의 전문적인 언론행위를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 그러나 만일 언론이 그들에게 위탁된 권리로써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언론의 역할은 그 궤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기업으로서 언론매체의 자유라기보다는 언론보도행위에 있어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언론의 자유는 언제나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복지, 그리고 국가 안녕질서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조건적인, 즉 제한적 자유이다.

언론이 사회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 체제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언론이 다른 사회체제와 달리 고유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매체적인 자유를 강조한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론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언론인 자신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전환기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언론인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는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언론환경의 도래와 급속히 늘어난 각종 신문의 엄청난 증가 등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문제를 새로이 핵심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중재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연평균 50건 내외로 접수되었던 것이 1989년도 말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율언론의 분위기가 확산되자 이와 함께 급격히 늘어난 언론매체, 특히 신문의 수가 엄청나게 늘게 되자 중재신청건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1989년에는 121 건, 1990년에는 159 건, 그리고 1991년 10 월말 현재에는 145 건의 접수현황을 보이고 있다.¹¹⁾ 최근의 이러한 중재신청의 급격한 증가는 분명히 예전에 비해 신문보도의 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중재신청사례의 상당수(40.6%)가 취하로 처리되고 있는 점은 바로 언론윤리의 새로운 측면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¹²⁾

이러한 언론의 영향, 또는 피해를 하르프레흐트(K. Harpprecht)는 언론의 「부드러운 폭력」, 또는 「은밀한 폭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¹³⁾ 이러한 의미에서 뉴스의 직접적인 생산자인 언론인은 언제나 기자개인의 윤리문제와, 조직으로서의 언론사의 윤리문제, 그리고 집단적 사회윤리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¹⁴⁾

기자개인의 윤리문제나 언론사의 윤리적 문제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적 사회윤리의 문제 역시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집단적 사회윤리의 문제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의미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소위 「소비자 주권」으로서의 독자의식과 관계되는 개념의 일종으로 보여질 수 있겠으나 이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집단적 책임의식이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통의 문제, 즉 한국언론이 오늘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의 집단만이 아닌 한국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언론이 전달하는 각종 정보가 사회의 정체성과 가치의 유지 및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언론만이 질 수 없으며, 사회의 모든 집단과 구성원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언론보도의 문제는 보도 주체로서의 기자개인의 윤리적 보도행위, 즉 규범적 차원에서의 객관적 윤리의 문제와, 언론사의 보도행위가 궁극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져야 하는 당위적인 사회윤리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것은 일종의 주관적 윤리로서 각 언론사가 내걸고 있는 사시와 관련해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언론보도 중 사실이나 논설 등 의견기사의 목적성이 사회의 가치와 부합되는 방향으로의 합병적이고 이성적인 책임있는 행위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강조됨으로써 목적지향적 윤리의식을 말한다.¹⁵⁾

그러나 이러한 기자개인의 윤리나 언론사의 윤리문제는 지나치게 당위적인 개념으로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로 인한 직접적인 산물로서의 뉴스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것은 사실보도와 관련한 실질적 차원의 문제로서 뉴스의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이 분석될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보도와 왜곡보도의 구분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언론이 얼마나 진실된 보도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언론의 사실보도와 왜곡보도의 유형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도 조사에 의하면, 신문의 진실된 보도(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보도)에 대해 언론인 스스로가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문이 진실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0.3%에 불과하고,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14.4%에 그치고 있다.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과반수(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30.5%,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면 신문이 진실보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은 14.7% 정도에 불과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32.5%에 이르고 있다.¹⁶⁾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신문이 진실된 보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지난 1989 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39.8%에서 7.3% 가량 줄어든 것은 기자들 스스로가 지난 2년 동안 「진실된 보도」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노력을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그러나 언론의 무분별한 경쟁은 오보를 남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오보의 원인과 관련하여 이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오보로 인한 민권침해에 대한 이유이다.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주된 이유가 「상업주의로 인한 지나친 경쟁」(41.2%)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언론인의 윤리성 결여」(21.7%), 「제작상의 특성에 의한 부정확한 보도」(17.5%), 그리고 「언론인의 파질 결여」(13.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의 상업화로 인한 과당경쟁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기자들의 윤리성 부족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년 후 실시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오보의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보의 가장 큰 원인은, 43.5%가 「기자의 부주의」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이 「매체간의 경쟁」(20.8%)이고, 「전문성 결여」가 17.5%, 「뉴스원측에 의한 것」이 10.9%로 나타나고 있다.¹⁹⁾

뉴스란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건, 사건에 대한 언론인들의 지각,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언론사의 요구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산물로 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언론보도가 객관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고 뉴스의 사실보도가 또한 가능할 수 없다는 가정이 성립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언론보도로 인한 결과로 수용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언론의 오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권리의 침해는 국민의 알 권리의 수탁자로서의 언론이 그 권리를 남용한 결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단지 개인의 명예나 권리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사회안정질서의 파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²⁰⁾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행위야말로 자유로운 정보의 공개시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뉴스의 직접적인 생산자인 언론인은 언제나 기자개인의 윤리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의 언론사의 윤리문제, 그리고 집단적 사회윤리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IV. 언론윤리와 자율규제

언론윤리란 궁극적으로는 진리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본성격으로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회에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은 이른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이것은 보도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믿고 기대하기 때문이다.²¹⁾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진리의 한 형태로서 공익을 저해하는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외부로부터 제한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제한은 언론 스스로가 행하는 자율규제라 하겠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의미를 보다 명 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성원들의 행위에 어떠한 규제가 가해진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작용을 하는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강제성을 띠고 밖으로부터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힘, 즉 법이나 권력행사가 있다. 둘째는 행위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회적 이목, 즉 사회규범이나 문화체계이다. 셋째는 행위자가 내심의 요청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에게 가하는 자제력, 즉 윤리의식이다. 이 세 가지의 규제력 가운데서 사회가 언론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가 자기에게 가하는 자제력, 즉 윤리의식이라 하겠다. 이것이 곧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율규제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율규제란 이러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들이나 언론인들이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규제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율규제라 함은 곧 언론의 윤리실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실천은 언론이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언론자유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스스로 윤리강령 내지는 실천요강을 제정하며, 사회적 공공기구로서 자율규제기구 등을 마련하여 언론의 활동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보일 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해서 언론의 책임이나 윤리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 윤리적으로 존경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언론인들의 직업윤리의식이 또한 중요하다.

산업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직업의 특징으로는 직업의 전문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산업사회와 더불어 전문직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직업의 전문화를 분석한 카플로(T. Caplow)에 의하면, 직업의 전문화과정은 먼저 전문직으로서의 조직체가 형성되고, 전문직 윤리강령이 채택되며, 전문직을 양성하는 기관이 설립 되는 절차를 거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어(Wibert E. Moore)는 전문직의 특성을 사용하는 전문직의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기도 한다.²²⁾

1) 고도의 지적 훈련과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며, 2) 공공에 대한 봉사를 주된 목표로 삼으며, 기술과 지식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책임을 지며, 3) 금전적 보수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며 부의 획득을 직업상의 성공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며, 4)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유를 중시하며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볼 때 전문직의 최대의 특성은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도의 지적 훈련이나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고 타인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결국 공공에 대한 봉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언론의 책임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책임(Responsibility)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책임(Accountability)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언론윤리와 관련하여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외부에서 강요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오늘날 언론계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는 자율규제기구와 윤리강령을 들 수 있다.²³⁾

자율규제기구의 기능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언론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신문윤리를 위반한 언론활동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널리 공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으로부터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많은 경비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법원에 제소하기보다 이러한 자율규제기구에 호소해서 언론의 부당성을 알리게 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기구의 기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보도의 타당성을 확인해 줌으로써 언론과 수용자 사이의 신뢰성을 높여주며, 둘째 언론에 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언론활동을 확보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존시켜 주며, 셋째, 언론의 활동을 수용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시키며, 넷째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복잡한 법정소송의 건수와 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다섯째 언론의 제반활동을 개선하고 언론인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한다.²⁴⁾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탈규제화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기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메릴(J. Merrill) 교수는 「이제는 자율규제기구 보다는 언론인 개개인의 윤리와 책임감에 호소해야 하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윤리위원회」도 언론을 「통제하는 메카니즘」이기 때문에 언론종사자 개개인의 책임감과 윤리관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⁵⁾ 비록 자율적 규제라는 특성의 가치가 부여된 기구일지라도 이미 그것이 제도화된 규제기구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때 언론인 스스로 행위지침을 마련해 지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윤리규제기구 보다는 언론인들 스스로 제정해 실천하는 윤리강령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V. 「언론윤리강령」의 과제

객관적 사실에 대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때, 언론윤리강령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보도지침, 또는 보도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윤리강령은 기자들의 언론보도행위에 있어서 윤리문제와 관련된 책임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행동하는 데 필요한 행동방향의 선택기준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언론보도는 많은 인권침해관련 사례를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고, 기자들의 의식도 「원칙에는 동의 하나 실천은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윤리강령의 기능이 때로는 유용한

행위지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어휘들로 구성된 윤리강령은 때로는 단지 언론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적 존재로 공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강령의 실천적 의미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따른다.

우리나라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은 전국적 차원의 강령으로서, 개별사에 의한 윤리강령보다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치기준들을 규정 하고 있는 반면 개별사 강령 인 「한겨레신문윤리강령」, 「KBS 방송강령」, 「MBC 방송강령」, 「동아일보 기자윤리 강령」 등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제정된 것으로서, 현 사회현실에의 고려가 깃들여 있으며 다분히 실천적이고 실용적 구체적 윤리규정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²⁶⁾

그 주제항목은 대부분 1) 보도의 목표와 책임, 2) 보도와 인권보호, 3) 뉴스원 공개 및 비밀, 4) 이해 상충, 5) 기자의 품위 및 직업윤리 등의 5가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한국의 언론인 조직이 채택하고 있는 윤리강령의 경우는 대체로 언론윤리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개별 언론사에 의해 제정된 윤리강령은 기자들이 일상의 취재 보도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의 준칙을 통해 금품 및 향응의 수수, 그 밖의 선물이나 무료여행, 할인혜택 등의 취재편의 제공, 정치나 외부활동 금지를 통한 이해상충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차이점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국적 차원의 신문윤리강령은 1959년 제정, 1961년에 보완된 것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개별사 기자윤리강령과 비교해 볼 때 비현실적이고 구태의연한 최소원리의 규정인데 반해, 개별사 기자윤리 강령들은 전문이나 총강, 강령으로 이념을 간단명료하게 전제하면서 행동준칙에 있어서는 금품수수문제나 외부활동 및 이권개입문제, 이해상충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어 비교적 현실적 적용상이나 실천성을 강조한 점 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전국규모의 자율규제기구로서 한국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에 대한 몇가지 과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

첫째, 전국적 차원의 「한국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은 변천하는 사회환경과 언론풍토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수정, 보완과 앞으로 제정될 개별사 윤리강령에 있어서는 원리원칙들이 보다 숙고된 도덕적 판단과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불완전한 직관능력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해, 윤리규정은 옳고 그른 판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그 판단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 조정을 위한 '상위원칙'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행위주체인 언론인이 현 언론체제, 사회생활 속에서 부담할 수 없는 이상적인 도덕의무는 개선 또는 폐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것으로 대체시켜야 할 것이다.²⁷⁾

셋째, 외국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현 우리 나라 윤리기구들이 심의한 언론침해사례 중 가장 많은 「프라이버시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보편화된 기자의 품위와 관련되는 사항도 분명히 규정할 시점에 있으므로, 기자의 「춘지, 금품수수, 향응, 취재편의 제공의 한계, 외부활동 및 이권개입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이러한 언론인의 품위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어 하나의 윤리기준으로 확립, 이를 어길 경우 신문윤리위원회 및 자사 윤리위에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해야 한다.²⁸⁾

한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고유의 윤리전통이나 도덕정서를 무시하거나 외국강령을 무조건 모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1964 년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이나 1980 년도의 언론통폐합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언론윤리의 상실로 인해 언론에 대한 사회의 비판여론이 고조되어 언론이 도마위에 오르게 되면 언론은 또다시 타율에 의한 규제를 면할 수 없게 됨을 언론인은 명심해야 하며,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인에게만 도덕적 의무를 지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언론인의 도덕적 판단범위를 최소화하는 실용적, 구체적 방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메릴(J. Merrill)과 같은 학자는 이같은 자율규제기구나 윤리강령을 불필요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잘못하면 공공의 비판 이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언론이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나 이미지 전략으로 전략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⁹⁾

뿐만 아니라 언론자율규제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은 그 내용의 추상성이나 모호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인의 행동지침으로서 효용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론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언론의 윤리적 실천과 공공책임은 자율규제기구나 윤리강령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율규제기구와 윤리강령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쟁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언론윤리나 자율규제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리강령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언론윤리강령들의 내용들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언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행위지침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강령의 내용들을 보면 추상적이고 애매한 상투적인 어휘들이 구체적인 개념규정도 없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아서 언론인들과 외부인들 사이에 윤리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해 놓고 있지만, 언론인들이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그 강령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셋째, 특수한 상황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을 때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효율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언론강령은 형식적인 걸치레라는 비판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언론윤리 강령은 공공의 비난을 미봉책으로 회피하거나 사회적 책임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단순히 언론기업의 자기 PR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윤리강령들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으로 유용한 윤리 강령으로서 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첫째, 윤리강령의 내용은 언론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들과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될 최소한의 기준들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야 한다.

둘째, 극단적인 희생정신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 강령의 규정은 보통사람의 양심으로서 충분히 수용가능한 행위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강령의 언어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애매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추상적인 개념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과해야 한다.

넷째, 강령의 조항들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윤리강령은 공공의 이익만이 아니라 언론인의 이익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윤리강령은 지속적인 토론과 숙고를 통해 시대상황에 맞춰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윤리강령에는 언론조직과 언론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윤리적 책임의 대상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여덟째, 윤리강령의 내용이나 조항들은 각각의 도덕적 원칙이나 윤리적 가치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은 윤리조항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왜 그 조항이 올바른 것인가를 알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홉째, 윤리강령의 조항들은 모든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즉 경영주, 일반 기자, 그리고 노동조합 등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여 강령을 제작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강령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처벌이나 책임을 부과하는 절차나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강령의 의미와 요구를 해석하는 기구를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VI. 맺는 말

우리나라의 경우, 1954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 채택한 「한국신문윤리강령」이 최초의 윤리규정으로서, 동 강령은 1961년 신문윤리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만들어진 신문윤리실천요강과 함께 한국 언론인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의 체계이자 자율규제의 근거가 되고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개별 언론사 자체적 윤리강령 제정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뒤늦게나마 1988년 5월 한겨레신문이 최초로 개별사에 의한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1990년 1월 한국방송공사(KBS)가 최초로 「방송강령」을 제정, 공표하였다. 그리고 1990년 6월 「MBC 방송강령」과 1991년 3월 동아일보 윤리 강령이 제정, 공표되었고 그 밖의 다른 신문사에서도 점차 이러한 자사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개별 언론사에 의한 내부적 윤리강령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로서 그것이 전국 차원의 윤리강령보다 행위지침을 더 세부적으로 밝힘으로써 윤리강령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각 언론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각 언론사의 윤리관 확립과 실천에 대한 의지를 선언적으로 천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윤리문제는 매 상황마다 언론활동을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기자 자신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과 그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언론윤리의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그 책임이 우선되는 것은 언론인 자신이며 언론인이 제대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윤리강령도 언론윤리심의 기구도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언론인들은 지나친 독선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진정한 사회의 목탁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높은 금지와 품위를 지켜야 할 것이고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언론을 통제, 감시하려는 시도에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선 기자들은 보도와 관련되는 이권 제공 또는 촌지 등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는 기개가 절실히 요청되며 언론인들이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언론의 권위를 지키며 그 사명을 다하는 바탕위에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풍토의 조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론형성, 민의대변, 국정감시 등 민주국가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주

- 1)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신문방송연감」 1992, p. 51
- 2) 세계일보, 1992. 9. 22.
- 3) 이경자, "신문판매부수의 공개 :자원관리의 측면", 한국언론학회 '쟁점과 토론', 「ABC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발표논문, 1992. 7. 23.
- 4)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1990.
- 5) John Stuart Mill, On Liberty,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Subjection of Women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P. 23~24.
- 서정우외, 「언론통제이론」 (서울:법문사, 1986), 54~55 면에서 재인용.
- 6) Stephan Klaidman, Tom 1. Beauchamp, 「The Virtuous Journali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4.
- 7) William Horosz, 「The Crisis of Responsibility」, (Norman : th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75), pp. vii-ix ;
- 8)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제 1 회 전국기자 직업의식 조사, 1989.
- 9) 서정우 외, 「언론통제이론」, (서울: 법문사, 1987), p.58.
- 10) E. E. Dennis, "Social responsibility, representation and reality", Denis Elliott, 「Responsible Journalism」, New York / London, Sage, 1986, p. 100.
- 11) 양삼승, "중재사례로 본 언론침해 실태", 「언론중재」, 1991/겨울호, pp.23~24.

- 12) 취하의 경우 언론사가 관련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나 정식 반박문, 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다른 기사를 게재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언론윤리의 문제가 새로운 측면에서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13) Klaus Harpprecht, 「Machen Medien dumm, arrogant oder bloss banal?, ORF, intern-extra, Atrium-Gespräch Vortrag」, 1985. 3. 19.
- 14) Heinz Prüer, "Journalismus-Krisen und Medien-Ethik", 「Communicatio Socialis」, 1990/1, pp.3~17.
- 15) Gerwin Haybäck, "Medium und Wahrheit. Grundprobleme journalistischer Ethik", 「communicatio Socialis」, 1990/1, pp. 20~21.
- 16)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제 2 회 전국기자 직업의식 조사」, 조사연구 91-4, 1991, p. 89.
- 17) 위의 책.
- 18)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제 1 회 전국기자 직업의식 조사", 1989, 「신문과 방송」, 1989/11, pp.7~8 에서 재인용.
- 19) cf : 한국언론연구원, 제 2 회 전국기자의식조사 연구.
- 20) cf : 서정우, 박종수, 「언론오보 사례연구: 정부시책 보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조사연구 92-4, 1992. 11.
- 21) 박종수, "언론보도와 윤리강령",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의 윤리강령과 보도 기준」, 서울, 언론연구원 연구서 14, 1991. p. 10
- 22) Wibert 3. Moor, 「The Profession, roles and rul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0), pp.3~22.
- 23) Everette E. Dennis & John C. Merrill, 「Basic Issues in Mass Communication : A Debate」 (New York : Macmillan, 1984), p.161.
- 24) 위의 책, pp.162~166.
- 25) 김지운, "신문윤리위원회의 현황과 전장", 김동철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 (서울 : 나남, 1993) , PP. 55~74 에서 재 인용.
- 26) 박종수, 앞의 글 참조.
- 27) 유일상, "언론사마다 윤리강령이 제정될 필요는 없는가", 「신문과 방송」 1989/2, p.37.
- 28) 엄기형, "언론윤리 문제의 고찰과 과제", 「신문연구」, 1990/여름, pp.175~176.
- 29) Everette E. Dennis & John C. Merrill, 앞의 책, pp.162~166.
- 30) 박종수, 앞의 글 참조.

- 연세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석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대(언론학 박사)
- 저술 : 「언론오보사례연구」, 「언론보도와 윤리강령」, 「언론보도와 객관성」 외
- 현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